

교수학습지원센터운영규정

제정 2013. 5. 1	개정 2013. 7.23
개정 2014. 5.29	개정 2014.11.19
개정 2016. 6.23	개정 2017. 8.14
	개정 2020.03.02

제1조(명칭) 이 기관은 국제대학교 교수학습지원센터(이하 ‘센터’라 한다)라 칭한다.

제2조(목적) 이 규정은 국제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라 한다) 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3조(조직) ① 센터에는 센터장과 주임교수를 둘 수 있다.

② 센터장과 주임교수는 본교 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하며,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③ 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약간 명의 직원과 조교를 둘 수 있다.

제4조(운영위원회) ① 센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, 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(이하“위원회”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센터 운영에 관한 사업계획 및 예·결산에 관한 사항
2. 센터 운영에 관련된 규정의 제·개정에 관한 사항
3. 기타 센터의 운영과 사업에 관한 주요 사항

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7인 이내의 교직원으로 구성한다.

④ 위원회의 위원장은 센터장으로 하고, 위원은 센터장의 제청으로 총장이 임명한다.

⑤ 위원장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하며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.

⑥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.

제5조(전문위원) ① 센터는 교육의 수월성을 제고하고, 양질의 교수학습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.

1. 교수·학습법을 연구개발하고 진단 및 평가하기 위하여 전문위원 약간 명을 둘 수 있다.
2. 전문위원은 센터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고, 임기는 1년으로 하되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전문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한다.

1. 교수·학습방법의 연구 및 개발
2. 교수·학습방법의 진단 및 평가
3. 기타 센터의 주요 연구업무 및 교육자문

[본조신설 2020.03.02.]

제6조(사업) 센터는 교수 및 학생의 역량강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지원, 운영함으로써 대학교육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며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.<개정 2017.8.14.>

1.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 전반의 계획 수립 및 운영<개정 2017.8.14.>
2. 교수학습 연구 개발 관련 업무
3. 교수학습 클리닉 업무
4. 교수법 및 학습법 관련 콘텐츠 개발 업무
5. 이러닝 시스템 운영을 위한 제반사항
6. 교수학습 매체 교육 및 제작 지원
7. NCS 기반 교육과정을 위한 기초학습능력, 직업기초능력, 전공기초능력, 전공심화능력의 향상을 위한 학습 지원 프로그램 계획 수립 및 운영<개정 2017.8.14.>

8. 교수학습 지원 프로그램의 평가 및 개선을 통한 환류<개정 2017.8.14.>

9. 기타 센터의 설치목적에 부합하는 업무<개정 2017.8.14.>

제7조(사업계획) 센터는 전년도 사업평가를 통한 개선안과 교수학습에 대한 수요를 반영하여 매해년도 초에 사업계획을 수립하며 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위원회와 협력하여 사업을 운영한다.

제8조(재정) 센터의 재정은 본 대학교 예산에 귀속한다.

제9조(회계) 센터의 회계와 예·결산에 관한 사항은 본 대학교의 회계절차에 따른다.

제10조(운영세칙) 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장의 승인을 얻어 개발원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3년 7월 23일부터 시행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